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
----------	-----

제안년월일 : 1994. 6.

제안자 : 김진학의원외 12인.

□ 제안이유

1.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이익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조성을 원활히 하고,
2. 용자대상사업을 댐주변사업 및 농촌도로사업으로 확대, 지방자치 완성에 따른 준비단계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안 제1조)
2.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는 항 신설 (안 제3조 제3항)
3. 용자순위중 댐주변 사업과 농촌도로사업을 추가 삽입 (안 제 9조)
4. 위원으로 농업정책과장과 도로과장을 추가로 포함함. (안 제15조)

□ 근거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45조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
3.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

제9조 중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에”를 “상하수도사업과 댐주변사업,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 농촌도로사업에”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조 제1항중 “다음과 같이 하되,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를 “다음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용자 대상 사업주체의 재정상태 용자사업의 공공성, 수익성등을 고려하여 3% ~ 10%범위내에서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 제1항 제1호중 “상·하수도 사업”을 “상·하수도 사업 및 댐 주변사업”으로 하고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 상환이 곤란한 재정 취약 단체에 대하여는 6.5% ~ 7%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15조 제2항중 “보건과장다음에 “농업정책과장”을 삽입하고 “도시개발과장” 다음에 “도로과장”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충청북도의 주민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재원조달) ㉔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조(목적)충청북도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p> <p>제3조(재원조달) ㉔</p> <p>㉔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할 수 있다.</p>	<p>제8조(용자대상) 생략.</p> <p>제9조(용자순위)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에..</p>	<p>제8조(용자대상) 현행과 같음.</p> <p>제9조(용자순위) ..상하수도사업과 댐주변사업,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농촌도로사업에....</p>

< 지방자치법 >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화제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5조(지방채발행계획) 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4·1)

< 지방공기업법 >

제19조(지방채)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2·12·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92·12·8)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방법에 의하여 도, 시, 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도, 시, 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